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광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일명 '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')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,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.
이에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,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,
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안 제16조의2 신설)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